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86
----------	------

제출일자 : 2019. 11. 29.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주민 참여 등(안 제5조 ~ 제6조)
- 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7조 ~ 제12조)
- 라.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공공시설에 대한 검토사항, 가이드라인 등(안 제13조 ~ 제15조)
- 마.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안 별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의견 있음(차후 동 조례 개정 시 반영 적극검토)
 - 안 제7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별 고른 참여, 성인지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함.
 - 안 제15조 가이드라인에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9. 10. 11. ~ 10. 31.(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군의 출자·출연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군 소재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고, 군 경관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군 경관기본계획에도 따른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사항을 제안할 것과 그 제안 방법 등에 관하여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5조에 따른 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군의 다른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시설물인 경우
 3.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4.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군수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경우
 8.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 협의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안전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시설물등의 검토사항)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이하“검토사항”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맞추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4조 관련)

{다음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 간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 및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보도육교 다. 교차로, 지하도, 터널, 생태통로 등 라. 걷고 싶은 거리, 문화예술거리 등	
철도시설	가. 철도 시설물(교각 등) 나. 철도 관련 내·외부 설치물(노선안내도 포함) 다. 철도시설 출입구, 환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조형물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 다. 미디어아트	
공공미술	가. 벽화 나. 슈퍼그래픽	
휴양공간	가. 하천부지의 공공이용공간, 하천, 수변공간 등 나. 등산로, 산책로 등(단순 노면정비 제외)	
공공청사 · 문화복지 · 교통환경시설	가. 지방공공기관의 청사,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체육관,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라.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마.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바.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	
시각이미지	가. 정보디자인 개발 및 활용(정보체계, 그림문자, 지도, 서체) 나. 상징이미지 개발 및 활용(단체상징, 브랜드상징, 캐릭터, 고유문양, 서체 등)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시설물 (교통관련시설 포함)	가. 자전거 도로 나. 보도포장(맨홀, 트렌치, 수목보호대 등 포함) 다.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옹벽 라. 방음벽, 낙석방지망 마. 아케이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바. 중앙차선분리대 사. 방호울타리, 보호울타리, 가드레일, 볼라드 아. 가로등	
기 타	가. 대중교통정류소, 가로판매대, 자전거보관대 나.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관광안내소, 정보제공 부스 등 라. 분수대, 벤치, 정자, 음수대 마. 공중화장실, 시계탑, 조명탑, 휴지통 등 바. 공원등, 보행유도등 사.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아. 공개·전면공지, 광장 등	
안내사인	가.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전광판) 나. 디지털 영상매체 다.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라. 지정벽보판 마. 현수막 게시대 바. 그 밖의 각종 공공안내사인	
정보통신 · 전기통신설비	가. 신호등제어함, 가로등제어함, 상수도제어함 나. 분·배전함 다. 무선·휴대전화기지국, 통신안테나	
그 밖에 야간경관 등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